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정	2012.	6.	27.
개정	2013.	4.	25.
개정	2013.	10.	28.
개정	2015.	1.	6.
개정	2015.	12.	30.
개정	2017.	11.	24.
개정	2018.	1.	16.
개정	2018.	4.	6.
개정	2018.	6.	28.
개정	2019.	3.	28.
개정	2020.	8.	13.
개정	2022.	2.	28.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사무소
제4조 사업
제5조 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6조 임원의 정수
제7조 임원의 선임
제8조 임원의 임기
제9조 원장추천위원회
제10조 원장의 직무
제11조 이사장의 직무
제12조 이사의 직무
제13조 감사의 직무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 임원의 정계
제16조 임원의 보수
제17조 임원의 겸직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협력
제20조 겸직
제21조 겸직의 직무와 보수
제22조 겸직의 평가와 해제

제3장 이사회

-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제25조 이사회의 개최 등
제26조 이사회내 위원회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28조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29조 기본재산
제30조 중요재산의 처분

제31조 운영재원

- 제32조 회계원칙
제33조 사업연도
제34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5조 출연금의 지급 · 관리 및 사용
제36조 사업계획서 등
제37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38조 회계감사 등
제39조 결산서 등
제40조 잉여금의 처분
제41조 수익사업
제42조 기부금품의 접수 · 사용 등

제5장 직제, 위원회 등

- 제43조 직제
제44조 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제45조 위원회

제6장 부설기관 등

- 제46조 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47조 부설기관의 장
제48조 예산회계, 인사의 독립
제49조 부설기관의 운영
제50조 부설연구소 설치

제7장 보 칙

- 제51조 정관의 변경
제52조 규정의 제정
제53조 해산
제54조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제55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56조 공고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약칭 KIOST)로 표기 한다.

제2조(목적) 해양과기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 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4.)

제4조(사업) 해양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2.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 제도연구
3.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4. 해양관련 기기·장비기술개발과 검·교정
5.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수탁·위탁연구, 공동연구 및 기술제휴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창업 및 산업계 협력·지원 (개정 2020.8.13.)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기타 해양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8.13.)

제5조(대학원대학 설치 및 운영)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부설 대학원대학을 설치한다.

②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대학원대학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교직원 임면 등 대학원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학원대학의 장과 대학원대학 운영 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6조(임원의 정수) ① 해양과기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과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3.04.25.)

1. 해양과기원 원장
 2.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2013.04.25., 2017.11.24.)
 3.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말한다. 이하 “해양대학교”라 한다) 총장
-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해양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선임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장관이 승인한다.
- ④ 원장은 제9조의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이 승인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 재직 중 이사장으로 선임될 시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4.25.)
- ③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02.28.)
- ④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28., 개정 2022.02.28.)

- 제9조(원장추천위원회)** ①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원장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해양과기원을 대표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4.25., 2022.02.28)

- 제11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은 해양과기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제12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1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가 임기만료,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징계) ① 해양과기원의 임원(원장이 아닌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이 해임, 정직, 견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양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정신적인 질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7.11.24.)
 4.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7. 11. 24.)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17.11.24.)
- ② 이사회는 제 1항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01.16.)

제16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겸직) ① 상근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협력) 원장은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등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20조(겸직) ①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해양수산과학 관련 학과가 있는 국립대학을 말한다. 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겸직하는 해양과기원의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과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겸직연구원은 관련대학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원장이 겸직을 명한다.

④ 관련대학에 겸직하고자 하는 겸직교원은 원장이 관련대학의 총장에게 겸직을 요청한다.

⑤ 원장은 관련대학 총장과 다음 각 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대학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겸직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직연구원에게 보직을 명 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겸직연구원에게 보직을 명하는 경우에 관련대학에서 부여된 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관련대학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련대학 총장이 겸직교원에게 보직을 명하면서 해양과기원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요구하면 원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겸직연구원이 해양과기원에 보직되었을 때는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⑥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겸직의 평가와 해제) ① 겸직업무 종료 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겸직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겸직연구원이 겸직기관의 규정 준수 및 성실한 업무수행 등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원장은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이 겸직연구원의 겸직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겸직연구원의 겸직책무 위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 ④ 관련대학 총장이 관련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교원에 대하여 겸직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장관이 해양과기원의 연구·개발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여 겸직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해양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5.01.06.)
5. 부설기관장의 선임과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28.)
6.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9.03.28.)
8.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2. 해양과기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에 관한 사항(단, 기술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06.)
13. 기타 원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개최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3월, 12월)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원장, 감사가 업무상의 이유로 요구한 경우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임원 및 부설기관장의 선임과 징계,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3.28.)

⑥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이사 전원에게 즉시 통지하고,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 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28조(이사회의 운영규정 등)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기본재산) 해양과기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의 설립자 출연금
2. 대한민국정부,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출연 보조받은 토지·건물·기자재 금전
3.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이관되는 기본재산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30조(중요재산의 처분) ① 해양과기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31조(운영재원) 해양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 자체수입금, 차입금, 기본재산, 기금에서 생긴 과실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원칙) ① 해양과기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연도) 해양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원장은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제1항의 신청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8조(회계감사 등) ①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해양과기원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서 등) ① 원장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0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익사업) ① 해양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인쇄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해양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수익사업의 범위 · 절차 · 운영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2조(기부금품의 접수 · 사용 등) ① 해양과기원은 해양과기원의 연구 · 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 중 토지 ·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⑥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부금품의 접수 ·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직제, 위원회 등

제43조(직제) 해양과기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부설기관 및 분원설치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조(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 ① 해양과기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 및 해양과기원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2. 기타 해양과기원 운영과 연구수행 전반에 대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은 ‘해외 과학자’(외국거주자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인 자)를 포함하여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해양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위원회 등) 원장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부설기관 등

제46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제3조에 따른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은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부설기관의 장) ① 부설기관에는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당해 부설기관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④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장이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해임, 정직, 견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여부 결정 기한은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2018.01.16.)

- ⑥ 부설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02.28)
- ⑦ 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기관 직제순위에 따라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2.28)

제48조(예산회계, 인사의 독립) ① 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 ② 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설기관의 회계 및 결산은 해양과기원의 회계 및 결산과 분리하여 실시한다.
- ④ 부설기관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행한다.

제49조(부설기관의 운영) ① 원장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별도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고 시행한다.

- ②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과기원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0조(부설 연구소의 설치) (개정 2013.10.28.) ① 남·북극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와 관련지역에서의 기초 및 첨단응용과학 연구
 2. 극지인프라(남·북극과학기지, 쇄빙선 등) 및 해외지원사무소의 운영과 연구 활동 지원
 3. 극지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 연구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5. 국내 학·연·산 극지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6. 극지활동에 관한 대국민 홍보
 7. 전 각 호의 부대업무 및 연구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 ②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해양플랜트분야 공학 및 기반기술 개발과 융복합·실용화 연구
2. 선박해양플랜트분야 국가정책 수립지원 및 국제규제 대응 전략 개발
3. 선박해양플랜트분야 국내외 학·연·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4. 선박해양플랜트분야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
5. 전 각 호의 부대업무 및 연구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 7 장 보 칙

제5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양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해산) ① 해양과기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4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해양과기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획득한 지식재산권은 해양과기원이 소유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식재산권 소유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 및 그 절차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비밀엄수의 의무)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공고)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라 공고할 사항은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과기원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해양과기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해양과기원 설립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설립행위) ① 해양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제반행위는 해양과기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위하여 해양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지출한 경비는 해양과기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4조(이사 및 감사 임명의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 설립당시의 이사와 감사는 장관이 임명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해양과기원 설립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이사장 및 원장 임명의 특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당시 이사장은 해양대학교 총장이 하고, 설립 당시의 원장은 종전의 한국해양 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 원장의 임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업무, 재산, 권리·의무의 승계) 해양과기원은 종전의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 등 모든 업무,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아래 명의의 설립자가 현금 일백만원 (₩1,000,000)을 출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 전원은 한국해양과학 기술원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2년 6월 27일에 각각 기명 날인함.

설립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인)

정관 작성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준비위원

국토해양부 차관 주성호 (인)

강정극 (인)

김진현 (인)

이영활 (인)

신평식 (인)

조동호 (인)

김경렬 (인)

김동혁 (인)

노영재 (인)

박원재 (인)

부 칙 (2013.04.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설 극지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2013.10.28.)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50조 2항은 2014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5.01.06.)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4.)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6.)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4.06.)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28.)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8.)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13.)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2.28.)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